

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① (계약기간)

1~5등급에 장기요양 대상자로 계약일로부터 등급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며, 계약기간 중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해제 될 수 있다. 갱신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다.

② (계약목적)

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

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,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

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

향상시키고자 한다.

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

1.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

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(총 수가금액×본인부담율)을

대상자(또는 보호자)로부터 받고,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(공단부담금)를

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.

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[별표1,2]에 따른다.

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.

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

적용한다.

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,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**전액 본인이 부담**하여야 한다.

2.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

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, 산정기준은 [별표1]와 같다.

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[별표3]과 같이 가산할 수

있다. 단, 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.

3.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

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[별표4]에 따른다.

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

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,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

80%를 산정한다.

4. 그 밖의 병원이용 등 기타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(또는 보호자)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2026년 수가반영

－별표1. 방문요양 요금표

분류번호	분 류	금액(원)	요 금			
			일반요금	의료수급자(6%,9%)	기초수급자	
가-1	30분 이상	17,450	2,620	1,050	1,570	0
가-2	60분 이상	25,320	3,800	1,520	2,280	0
가-3	90분 이상	34,120	5,120	2,050	2,050	0
가-4	120분 이상	43,430	6,510	2,610	3,910	0
가-5	150분 이상	50,640	7,600	3,040	4,560	0
가-6	180분 이상	57,020	8,550	3,420	5,130	0
가-7	210분 이상	63,530	9,530	3,810	5,720	0
가-8	240분 이상	70,080	10,510	4,200	6,310	0

－별표2. 재가급여 월한도액

등 급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 등급	일반 : 15% 의료,경감 : 6,9% 기초생활 : 0%
월 한도	2,512,900	2,331,200	1,528,200	1,409,700	1,208,900	676,320	

-별표3.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

서비스 제공시간	금액(원)
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에 급여제공시	[별표1]의 소정수가에 30%를 가산
「근로기준법」제55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및 「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급여제공시	[별표1]의 소정수가에 50%를 가산
중복될 경우 「근로기준법」제55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및 「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급여제공 기준에 따른다.	

- 별표4. 방문목욕 요금표

구분	수가	본인부담금			
		일반요금	의료수급자(6%, 9%)	기초수급자	
차량이용(차량 내)	88,990	13,350	5,340	8,010	0
차량이용(가정 내)	80,230	12,030	4,810	7,220	0
차량 미 이용	50,100	7,520	3,010	4,510	0

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, 계약의 해제

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신원인수인의 권리

-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
- ② 이용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
- ③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 등을 변경, 해지 가능한 권리

2. 신원인수인의 의무

- ① 이용자의 건강, 병적상태 등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
-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
- ③ 이용자의 인적사항 등 변경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
-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

3. 계약의 해제

- ① 계약을 연장하지 않거나 계약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
유선, 방문 등을 통해 이를 알려야 한다.

②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
1.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
2. 이용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
3. 이용자(보호자)의 건강진단 결과 「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4.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 제공 할 수 없는 경우
5. 본인부담금을 무단으로 연체하는 경우
6. 고의적으로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,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
7.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